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469호

의 안 명 고소·고발사건 수사 장기지연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대상기관 경찰청

의 결 일 2022. 6. 27.

주 문

‘고소·고발사건 수사 장기지연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6월 27일

위 원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욱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별지]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소·고발사건 수사 장기지연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2022. 6. 27.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개선방안	3
1. 수사기간 연장승인 세부절차 마련	
2. 수사기간 연장 보고시기·서식 명확화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	
I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5
〈참고〉 관련 규정	6



I. 추진배경

□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21.1.1.)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의 수사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촘촘한 국민권의 보호 필요성 증대

- 이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권한 남용,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경찰수사규칙」을 제정하는 등 절차적 통제 강화

□ 그러나, 경찰수사와 관련한 불만민원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특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지연 등 수사 절차 규정 미준수에 대한 불만민원 다수 발생

※ “변호사 67%,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 심각”(‘22.3.17. 언론보도)

〈수사 지연 및 수사 연장승인 보고 누락 사례〉

(사례1) 수사 지연 사례(서울, ○○경찰서)

- 신청인이 고소(2020. 6월)한 인터넷을 이용한 무단 주식거래 사건을 8개월 간 수사(2021. 3월 종결)하면서, 고소인 조사(2020. 7월), 피고소인 조사(2020. 8월, 10월) 외 다른 수사활동을 하지 않고 연장승인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사례2) 수사기간 연장승인 보고 누락 사례(경기, ○○경찰서)

- 신청인이 고소(2020. 7월)한 사기 사건을 8개월 간 수사(2021. 4월 종결)하면서, 인사발령과 업무분장 변경으로 담당 수사관이 총 4차례 변경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수사기간 연장승인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 따라서, 고소·고발사건 관계인의 불안정한 법적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 장기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II.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연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연장 보고시기·서식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사 진행상황 보고로 갈음하고 있으며, 1회 보고 이후에는 별도의 보고·관리 절차가 없음

「경찰수사규칙」(2022. 1. 4.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 문제점

- 수사 진행상황 1회 보고 후에 사건 처리를 장기간 방치·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사촉구 민원 빈발

※ 우리 위원회는 최근 3년('19 ~ '21년) 간 접수된 수사 지연 및 수사기간 연장 보고 누락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총 25건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음

- 수사기간 연장 승인시기·서식·방법·주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경찰관의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

※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방법과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됨(고소·고발사건의 기일연장 건의 방법 질의, ○○경찰청 Q&A 게시판, '21.9.17.)

Ⅲ. 개선방안

1. 수사기간 연장승인 세부절차 마련

□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 연장승인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수사의 장기지연을 방지

○ 고소·고발사건 수사 개시 후 일정 기간(예: 매 3개월)이 도과할 때 마다 부서장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도록 개선

□ 입건 전 조사와 동일하게 1년 이상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 1년 이상 장기 미처리 사건은 관서장 등에게 주기적으로 (예: 매년 6월, 12월)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개선

※ 「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제4판, 2021. 9. 29)」

- 고소·고발을 제외한 수사·입건 전 조사 행위별 일몰제 지침 일부 발체

구 분	조치할 사항
3개월 경과 시	수사부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 보고 ※ 수사부서장은 과장급
6개월 경과 시	수사부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 보고 및 분석회의 (참석: 수사부서장, 팀장, 팀원)
1년 경과 시 (이후 6개월 마다)	<원칙> 수사부서장이 수사종결 지휘 <예외> ① 관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 보고 및 분석회의 (참석: 관서장, 수사부서장, 팀장, 팀원) ※ 시도경찰청의 경우, 관서장을 부장으로 대체 가능 ② 상급관서 수사부서장에게 수사기간 연장 건의
<분석회의 시 검토할 사항> 수사 진행상황 확인, 계속 수사할 필요성 판단 및 필요 시 수사할 사항 검토 상급관서(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등)로 사건 인계 필요성 검토 등	

2. 수사기간 연장 보고시기·서식 명확화

□ 수사기간 연장 보고시기를 특정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 방지

○ 수사 개시 후 매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

현행	개정안(예시)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 ----- ----- ② ----- -----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매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

□ 수사기간 연장 보고서식을 마련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 방지

○ 「범죄수사규칙」 제227조에 따른 ‘수사기일연장건의서’ 서식 준용

※ 인지 사건의 경우 「범죄수사규칙」 제227조에 따라 수사 연장 보고 중(별지 제157호 서식)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

□ 수사기간 연장승인 세부절차 마련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맞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능 구현

○ 수사기관 경과에 따른 보고기한 적색표시 또는 팝업창 현출

○ 연장승인 상신을 위한 보고서식 및 결재권자 자동 반영

○ 보고기한 내 연장 미승인 시 수사기록 입력 차단 기능 등

IV. 조치사항

□ 소관기관 : 경찰청

□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수사기간 연장승인 세부절차 마련	☐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기일 연장 절차 신설 ○ 연장보고 주기, 결재권자 등을 관련 규정에 명시 ☐ 1년 이상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 경찰관서장 등에게 주기적 보고절차 마련	'23년 6월
수사기간 연장 보고시기·서식 명확화	☐ 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 ○ 수사 개시 후 매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 ☐ 보고서식 마련 ○ '수사기일연장건의서' 서식 마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개선	☐ 관련 규정 개정에 맞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내 수사기일 연장기능 구현 ○ 수사기간 경과에 따른 보고기한 적색표시 또는 팝업창 현출 ○ 연장승인 상신을 위한 보고서식 및 결재권자 자동 반영 ○ 보고기한 내 연장 미승인 시 수사기록 입력 차단 기능 등	'23년 6월 ※ 관련 규정 개정 일정에 맞춰 개선

1. 「경찰수사규칙」 (2022. 1. 4.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95조(장기사건 수사종결) 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의 장기화, 범인 미검거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2. 「범죄수사규칙」 (2021. 9. 16. 경찰청훈령 제1035호)

제227조(장기사건 수사종결)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5조에 따라 장기사건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7호 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상급 수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 (제4판, 2021. 9. 29)

※ 고소·고발을 제외한 수사·입건 전 조사 행위별 일몰제 지침에서 일부 발췌

구 분	조치할 사항
3개월 경과 시	수사부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 보고 ※ 수사부서장은 과장급
6개월 경과 시	수사부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 보고 및 분석회의 (참석: 수사부서장, 팀장, 팀원)
1년 경과 시 (이후 6개월 마다)	<원칙> 수사부서장이 수사종결 지휘 <예외> ① 관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 보고 및 분석회의 (참석: 관서장, 수사부서장, 팀장, 팀원) ※ 시도경찰청의 경우, 관서장을 부장으로 대체 가능 ② 상급관서 수사부서장에게 수사기간 연장 건의
<분석회의 시 검토할 사항> 수사 진행상황 확인, 계속 수사할 필요성 판단 및 필요 시 수사할 사항 검토 상급관서(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등)로 사건 인계 필요성 검토 등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수사기일연장건의서

피의자 _____에 대한 _____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기일 연
장을 전의합니다.

- I. 피의자 인적사항
- II.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 III. 범죄사실
- IV. 적용법조
- V. 수사기일 연장건의 사유
- VI. 향후수사계획

경로	지휘 및 의견	구분	결재	일시

▶ **수사기간 연장 보고 누락 사례(경기, ○○경찰서)**

- 신청인이 고소(2020. 7월)한 사기 사건을 8개월 간 수사(2021. 4월 종결)하면서, 인사 발령과 업무분장 변경으로 담당 수사관이 총 4차례 변경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수사 기간 연장 승인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 **수사기간 연장 보고 누락 사례(제주, ○○경찰서)**

- 신청인이 고소(2021. 1월)한 명예훼손 사건을 6개월 간 수사(2021. 7월 수사중)하면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 **수사기간 연장 보고 지연 사례(경북, ○○경찰서)**

- 신청인이 고소(2020. 4월)한 학교폭력 사건을 12개월 간 수사(2021. 4월 종결)하면서, 다수의 피고소인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을 이유로 뒤늦게 수사 진행상황 보고 (2020. 12월)를 한 사례

▶ **수사 지연 및 수사기간 연장 보고 누락 사례(서울, ○○경찰서)**

- 신청인이 고소(2020. 6월)한 인터넷을 이용한 무단 주식거래 사건을 8개월 간 수사 (2021. 3월 종결)하면서, 고소인 조사(2020. 7월), 피고소인 조사(2020. 8월, 10월) 외 다른 수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연장 승인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 **수사 지연 및 수사기간 연장 보고 누락 사례(충남, ○○경찰서)**

- 신청인이 고소(2020. 12월)한 사기 사건을 7개월 간 수사(2021. 7월 수사중)하면서, 고소인 조사(2020. 12월), 피고소인 조사(2020. 3월), 참고인 조사(2020. 7월)외 다른 수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연장 승인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 **수사 지연 사례(광주, ○○경찰서)**

- 신청인이 고발(2020. 6월)한 위증 사건을 7개월 간 수사(2021. 1월 종결)하면서, 고소인 조사 (2020. 6월), 피고소인 조사(2020. 9월), 수사 진행상황 보고 2회(2020. 9월, 12월) 외 다른 수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례

정 본 입 니 다 .

2022. 6. 28.

국 민 권 의 위 원 회

